제6회 규제합리화위원회
민생분과 회의록

2026. 6. 23.

국 무 조 정 실
규 제 조 정 실

Ⅰ. 회의개요

○ 일　　시 : ‘26. 6. 23. (화)

○ 출석위원(13명)

- 민간위원 : 박용진 분과위원장, 구본권, 박선규, 오균, 윤일홍, 이유정, 이인호, 이희숙, 정서원, 차상훈 위원

- 정부위원 : 국조실, 노동부, 복지부

Ⅱ. 상정안건

구분	의안번호	상정기관	의 안 명	구 분
①	2026-162	기후에너지환경부	「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개정안	의결안건

Ⅲ. 회의 결과

1. (의결) 「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개정안(기후부, 2026-162호)

소관 부처	기후에너지환경부
규제사무명	**1. 오인 표시·광고의 범위와 기준**
논의내용	○ **오인 표시·광고의 기준***과 관련하여, **전문가의 범위** 및 **암시에 해당하는 표현**에 대한 **기준이 명확하지 않아** 규제 적용의 **예측가능성**이 낮고, 일부 기업의 **규제 준수**에 **어려움**이 예상되나 * 별표1의2 다목 : 비살생물제품 또는 비살생물처리제품의 효과·효능의 주장, 그 밖에 제품정보를 기재하는 항목에 관련 분야 **전문가**가 그 제품의 살생물 기능을 지정·공인·추천·지도하거나 연구·개발·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또는 이를 **암시**하는 표현을 포함하는 표시·광고 - 기후부가 **개정안 제34조제4항 위임**에 따른 「**생활화학제품 표시·광고에 관한 규정**」(기후부 고시, 6.16 행정예고) **개정안**을 마련하고, - **업계 의견수렴**을 거쳐 개정안 별표1의2 제1호 다목의 '**전문가**' 범위, '**암시**' 판단 기준, **위반사례** 등을 담은 **가이드라인**을 제작중이며 - 가이드라인 작성시 관련 **산업계·시민사회 전문가**의 **의견 수렴** 및 **적극적 소통**을 통해 **제도 수용성**을 **제고**할 예정인 점 등이 인정되어 **개정안에 동의** ○ 다만, **개정안 시행('26.7.1) 직후**에는 **위임 고시** 및 **가이드라인**이 **마련**되지 않아 규제를 준수함에 있어 **일시적 혼란**이 있을 가능성 - **규제의 명확성·집행가능성**을 위해, **계도기간(6개월 이상)**을 가지고 **위임 고시·가이드라인**을 마련하고, **피규제자**가 **포장재 등**을 **교체**하도록 **안내**할 필요

위원회 결정 내용	▶ 화학제품안전법 제34조제4항에서 규정한대로 **금번 개정안**을 **'26.7.1부터 시행**하는 안은 **원안동의** - 다만, **6개월 이상의 계도기간**을 가지면서 **위임 고시** 및 **가이드라인**을 마련할 것을 **부대권고**